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20일, 한민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4. 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 9.16.)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9.22.)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한민수의원)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항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이하 “감시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과 항만 시설의 관리·운영 주체나 사용 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다기하여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직접 감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감시기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기 운영기관과의 직접 위탁계약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감시기 운영을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의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현재 공항·항만 시설의 관리·운영 구조가 복잡하여 실제 감시기 운영이 법정 수탁자가 아닌 별도의 현장 운영주체에 의해 재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률상 수탁자와 실제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책임관계가 불명확해지고 원안위의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감시기의 설치·운영 대상을 실제 운영기관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원안위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감시기 운영의 책임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현행법은 공항·항만 감시기의 설치·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 운영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하여 실제 감시기 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법체계 정비를 위해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항공보안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및 「항공보안법」에 따른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2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운영자”를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를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9조(공항·항만에 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생략)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 라 한다) 및 「항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 영하는 자(이하 “항 만시설운영자”라 한 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 색부지 확보에 협조 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9조(공항·항만에 의 감시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 ----- ----- -----.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 른 항공기취급업 자 및 같은 조 제 35호에 따른 항공 교통사업자	제19조(공항·항만에 의 감시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 ----- ----- -----.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u>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청,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u>	<u>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청,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u>
<신 설>	<u>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u>	<u>3. (개정안과 같음)</u>
<신 설>	<u>4.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u>	<u>4. 「항공보안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u>
<신 설>	<u>5.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u>	<u>5. (개정안과 같음)</u>
<신 설>	<u>6. 그 밖에 공항·항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u>	<u>6. (개정안과 같음)</u>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을 <u>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 운영자에게</u>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의 대상이 되는 공항·항만의 범위와 감시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로 지정하는 자</u> ③ ----- -----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이 경우 원 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 관 또는 단체에 대 하여 감시기의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 ----- ----- ----- ----- ----- ----- ----- -----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	---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등”을 “따른”으로 한다.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같은 조 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청,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3.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4. 「항공보안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자

5.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

6. 그 밖에 공항·항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감시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를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생략) ②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기 설치 및 검색부지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19조(공항·항만에의 감시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같은 조 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관리청,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위탁받은 <u>항공교통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u>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한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 운영자”라 한다)는 감시기로 검출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시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① ----- -----<u>자</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